

2012년 8월 제30호
ISSN 1976-6041(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한광일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경찰은 호국의 수호신이다 성낙인 경찰위원회 위원장

연구특집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학신 연구관
외국 사례로 본 주취자보호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이기수 연구관

치안정책동향

해외 경찰관련문헌 조사방법 -영국편-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연구관

치안현장탐구

과학수사 영역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꿈꾸며 경찰수사연수원 이형근·박상선 경감

입법·판례동향

2012. 7.~8. 국내외 입법 및 판례 소개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경찰은 호국의 수호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찰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경찰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수립 초기에 남북 갈등의 와중에서 국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다졌다. 1950년에 한국전쟁의 발발은 우리 경찰이 단순히 일반치안의 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호국(護國)의 수호신(守護神)으로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수많은 경찰이 전장에서 이슬과 같이 스러져갔다. 이제 국민들은 그 분들의 영혼이 잠든 삼천리강산에 그분들의 염원에 힘입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건국 초기에 정치권력에 의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권치안의 도구로 전략한 뼈아픈 역사적 사실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 시대의 아픔은 국가폭력의 현장에 경찰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위정자들은 언제나 우리 경찰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는 유혹을 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전시대적인 구악이나 행태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딜 자리를 상실했다.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 태어나야 함을 다 시금 인지시켜 준다.

국가 안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일반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조직과 경찰조직뿐이다. 일반행정기관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다. 출생신고에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일생은 곧 행정과 함께 한다. 하지만 일반행정은 그 말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곳이다. 물론 특별한 일이 발생하

면 행정도 국민의 삶에 참여하고 개입하기 마련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대 즉 낮 시간대에 한정된다. 하지만 경찰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경찰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 국민이 아니 일반 행정이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raison d'être)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 와중에도 변함없는 국가의 핵심과업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이 고전적인 명제는 근대입헌주의 국가의 초기단계에서 특히 강력하게 주창되었다. 즉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은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19세기적인 소극국가 즉 야경국가(夜警國家, Nachtwahlstaat)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야경국가란 그야말로 밤에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질서유지를 잘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달리말하자면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경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셈이다.

20세기 이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강조되면서 이제 국가는 소극국가, 야경국가에서 사회국가, 복지국가, 적극국가, 급부국가, 사회복지국가로 전이된다.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한다.

즉 국가는 국민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선(善)인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단순히 치안유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경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국가는 튼튼한 치안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자유가 확보되지 못하는 곳에 사회복지의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촌에서 개인적 자유의 향연을 최대한 구가한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 마 총기난사사건은 더 이상 공동체적인 안전과 자유 없이는 개인적 자유의 구가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안겨준다. 북유럽식 사회복지국가의 모델국가로 칭송받고 있는 스웨덴에서의 묻지 마 총기난사사건은 사회복지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도 엇비슷한 현상이 되풀이된다.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살인이 만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묻지 마 폭력살인까지 횡횡한다. 편안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와 같은 행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경찰이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을 생각하게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개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설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 국민들은 우리 경찰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시간 작동되는 경찰의 안전망은 국민들이 편히 쉬고 잠들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 안전망은 완결적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일이 벌어지면 경찰은 언제나 지탄의 대상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현대적인 위기의 상존화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펼쳐지는 현상들에 능동적인 대

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이자 그 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미비책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쩌면 경찰의 숙명일 것이다. 그렇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방위를 위한 예방경찰의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비추어 본다면 경찰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불가피하다. 경찰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경찰도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국가의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우리 경찰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조직이 안정되어야 한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최고 정책심의의결기관이다. 그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에 설립된 이후 조직의 안정을 구가한다. 하지만 경찰위원회는 조직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법상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청은 경찰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하이라키화된 조직체이다. 경찰위원회가 합의제기구라면 경찰청은 독임제관청이다. 이 두 조직체가 상호 협력과 견제 그리고 상응한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 본연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임제관청인 경찰청은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군대조직 못지않은 일사불란한 특수한 조직체여야 하지만, 동시에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기 보다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존재가 군대라면, 경찰은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밀착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존재이다.

이들테면 군대가 국가 속의 특수조직이라면 경찰은 사회 속의 특수조직이다.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법상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다. 이들테면 군대가 국가 속의 특수조직이라면 경찰은 사회 속의 특수조직이다.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법상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다.

임기제도가 바람직한 것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여태 경찰청장의 법상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다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조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경찰 수뇌부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한다. 국가기관의 최고수뇌부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자의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는 없고 이를 부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하지만 그 정치적 고려가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가운데 틈입된 정치적 고려가 결국 임명권자나 임명당하는 조직 자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를 잘 증명한다.

국가와 민족의 수호신으로 태어난 경찰은 그러나 경찰이 하고 있는 일만큼의 대접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과 회한을 안고 있는 조직체이다. 국민이 깨어 있는 시간은 물론이고, 국민이 곤히 잠든 시간에도 경찰은 언제나 깨어있어야 하고 또 깨어 있다. 하지만 그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는 언제나 경찰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어렵고 험한 일을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한두 가지 사건에서 야기된 국민의 생명침해는 경찰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그만큼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무한책임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온힘을 다해 일해 왔음에

도 사건만 발생하면 언제나 경찰은 동네북이 된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질책은 그만큼 국민들의 우리 경찰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반증이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진다. 하지만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깊어간다는 희망을 저버릴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 경찰은 선배들이 보여준 호국경찰의 정신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사회방위망 확립을 위한 경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경찰에게 부여된 숙명이라면 그 숙명적 길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PSI**

필자 주요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현)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현)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 한국 법교육학회 회장(현)
- 한국공법학회 회장 (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전)

- [저서]
- 헌법학
- 판례헌법
- 대한민국헌법사
- 헌법소송론
- 자금세탁방지법제론
-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 외 다수

■ 책임연구과제 요약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김 학 신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개 관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및 복용은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절도, 살인, 폭력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새로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마약을 접촉했던 유학생들의 마약 유입,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대검찰청 ‘소년 사범(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유형별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까지 전체사건 가운데 소년범죄는 4.4%였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07년 247명, 2008년 439명, 2009년 547명, 2010년 883명으로 꾸준히 증가, 4년 사이 369%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의 경우, 7월까지 677명이나 적발되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 백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나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본드나 부탄가스 등의 유해화학물질과 향정신 의약품 등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하여, 결국 중독이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류 관련 재범 가능성이 40%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의 실태, 문제점,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

국내 마약류 사범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다가 2002년도에 실시된 마약류사범 퇴치전략의 성공(10개과 224명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9,732명으로 전년도 대비 18.0% 가량 감소하였고,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 또한 2,028명으로 전년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8,642g으로 전년대비 15.5% 감소하였다.

특히, 대마초의 경우는 밀반입량도 276g으로 전년대비 98.7%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마약류 사범이 감소한 이유는 2010년도에 실시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에 단속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보통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고가의 마약은 접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의 마약보다 러미나, 엑스터시 등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마약류를 주로 남용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신분인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은 아래 [표]에 보듯이, 2006년 총 마약류 사범 7,709명에서 57명(0.7%), 2007년은 총 10,649명 중 65명(0.6%), 2008년은 총 9,898명 중 43명(0.4%)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검거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것은 2009년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총 11,875명의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이 203명(1.7%)으로 급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는 총 9,732명에서 113명(1.2%)으로 전년보다는 줄기는 하였지만, 최근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연 도 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업					
총 계	7,709	10,649	9,898	11,875	9,732
청소년(대학생 포함)	57	65	43	203	113
(%)	0.7%	0.6%	0.4%	1.7%	1.2%

* 출처: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를 재구성한 것임.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

첫째, 최근 폭력조직의 마약류 공급 범죄(2010년 기준, 공급 점유율은 51%)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외국인 강사 등에 의한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마약류 밀반입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필리핀의 마약청 등은 국가에서 마약수사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유관기관 간 전문마약수사 인력, 예산의 부족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의 경우에도 보통 인터넷 서버를 해외에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다 보니 실제 인터넷상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단속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은 국가 마약류범죄 예방전략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책은 전통적으로 근신, 정학, 자퇴권유 등 징계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결국 마약류를 남용한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치료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비행이나 범죄로 연계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 치료적인 측면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우리의 정책적인 우선 순위나 예산의 부족 등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치료적인 측면, 교정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겠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대처방안

① 청소년이 호기심을 갖고 마약류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마약류의 시작이 청소년기에 본드나 부탄가스, 신나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남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때 부터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 차단 뿐만 아니라 현재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도 필요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더욱 마약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완벽한 차단정책이 필요하다.

③ IT의 발달은 마약류 범죄 확산에도 영향을 미쳐 원어민 강사, 국내체류 외국인, 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마약 판매 사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④ 국가기관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는 마약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매체,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6,461개교에서 전시회를 하는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청소년 마약류의 예방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은 2008년도에 24개였던 마약류 원료 물질 지정을 2011년에는 30개로 확대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신종 환각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살빼는 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높은 20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2010년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 822개를 차단하였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의 확대,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의 기능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의 남용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현숙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신동욱, 이춘삼, 정웅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620-2874 (경비) 61-2874
- e-mail: webmaster@psi.go.kr



■ 기획특집

외국사례로 본 주취자보호 개선방안

이 기 수 경찰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음주인구는 전체의 73%를 넘는다고 한다. 그 만큼 사회 전반에 음주문화가 만연해 있고, 그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 건수가 2004년도 32,103건에서 2010년도에는 59,362건으로 185%나 증가했다. 또한 주취로 인한 범죄가 전체 범죄의 20%를 상회하고, 폭력은 35%,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50%가 넘는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440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음주와 그로인한 범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수치들이다.

주취자 처리의 문제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가 규정한 보호대상인 주취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따라서 주취자로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경우 주취자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할 경우 의료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후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내 적당한 구호기관이 없는 경우 조치가 곤란하고,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경찰은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므로 보호 중인 주취자의

의료구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경찰의 주취자 안정실에서 주취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이 전적인 책임 부담하게 되는데 주취자 안정실의 피보호자를 감시할만한 경찰력의 부족이나 전문적 의료지식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결국 경찰에서 운영했던 ‘주취자 안정실’이 유명무실화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선의로 했던 보호조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오히려 해당 경찰관이 엄청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11년 경찰청 설문조사에서도 ‘주취자 안정실’이 유명무실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1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와 책임만을 너무 부각하고 현장에서 일할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개선방안

영·미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① 일반경찰작용법이나 개별 법률에 의해 주취자에 대한 처벌 또는 강제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②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응급치료 등 긴급구호시설의 보호나 알콜 치료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③ 주취자 보호를 위해 경찰 또는 의료기관이 별도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은 우리에게 검토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해준다. 첫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중국에서 시행하는 ‘경찰관의 선의의 주취자 처리 업무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료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업무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의로 주취자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건강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영국의 경찰공의(FME : Forensic Medical Examiner)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의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구급자의 건강상태, 자해가능성 등을 검사·진단하고, 구급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병원호송 등을 조언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이 경찰공의의 조언대로 조치한다면 역시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에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명정상태로 있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고, 보호조치 시 비용을 주취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주취자의 의료구호 비용 등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찰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활용중인 주취해소센터일 것이다. 의료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주취자 격리와 보호, 치료 및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비경찰기관(주로 자치단체 소속)의 시설이다.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강제처분이나 인권 침해 논란, 안전사고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처럼 예산투입이나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에만 불완전한 상태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주취자 보호나 범죄문제는 그것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과 경찰력의 낭비(지구대 업무 중 주취자 처리가 21% 차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자유권에 대한 보호가 두터운 영·미와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주취로 인한 질서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주취행위 자체에 대하여 강력한 경찰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량한 일반시민의 자유권을 훼손하는 질서교란행위이고, 그런 사람의 자유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있다.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무집행방해, 그로 인한 피해경찰관의 치료나 보상은 너무나 미흡하다. 가해자와 합의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신적 피해는 거의 무시되는 실정이다. 또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처벌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를테면 지구대 출입구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거나, 경찰청 민원실에 말뚝을 뿌리는 행위 등이 처벌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어져 경찰관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 연구논문

해외 경찰관련문헌 조사방법 - 영국편 -

김 현 속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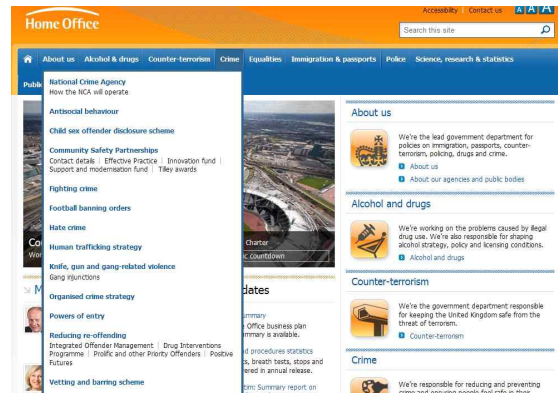
영국의 문헌조사방법도 지난 호에서 언급한 미국의 문헌조사방법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영국도 영연방과 각 소속국가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영국은 오랜 역사에 기원한 고유의 사법제도와 법률 제정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면을 이해하면 제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판례 및 법률, 실무자료

영국은 법원의 판결이 집적되어 형성된 보통법과 형평법의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법 국가라고 불리고 성문법 국가와 대비된다. 판례법 국가로서의 효율적인 법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선례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하다. 영국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므로 유럽공동체 법원의 판결에 구속되며, 영국의 최고법원인 House of Lords는 영국 상원의회의 법률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최상위심급으로 그 결정은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영국이 판례법국가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1800년대 이래로 대단히 많은 법률을 다양하게 제정하여 왔다. 영국의 경찰은 내무성(Home Office; homeoffice.gov.uk)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내무성은 주로 경찰에 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찰위원회, 경찰권한, 복지, 연금등과 관련한

정부시책이나 보고서, 매뉴얼 등을 발간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자료는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에서 관리·배포하고 있다. 통계수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지역경찰활동의 통계 등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한하여 <http://police.uk>에서 제공하고 있다. 검색창에 우편번호, 주소 등을 넣으면 범죠키도와 데이터를 범죠키유형별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전국경찰청장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 www.acpo.police.uk)에서 발간하는 경찰활동매뉴얼이나 정책자료집도 중요한 경찰관련 문헌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것이다.

영국은 1865년 판례출판위원회가 성립되어 법조인들의 통제하에 판례가 저렴하고 체계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판례출판위원회는 추기부터 전문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nns of Court¹⁾와 The Law Society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출판된 판례를 간단히 “Law Reports(www.lawreports.co.uk)”라고 하는데, 정부출판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곳으로는 Court Service(www.courtservice.gov.uk),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정부간행물출판국(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HMSO; www.legislation.gov.uk)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법률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이다. 이곳에서는 현행법에 대한 문헌자료인 Queen's Printer's Copy와 그 색인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1801년부터 현재까지의 규정이 질의·답변서 등 법률 제·개정 당시의 서류를 포함하여 수록되어 있다. 같은 법이지만 영국과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등 지역은 서로 다른 관습이나 법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맞는 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거나 상당수의 영국본토 법률의 적용지역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흔하다.

기타 영국 경찰과 관련하여 링크를 모아둔 곳도 있는데(www.police-information.co.uk/policelinks.html) 단순히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는 것은 하나, 꽤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아카이브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통폐합되거나 삭제된 사이트도 있으니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영국의 경찰교육훈련기관은 신입순경교육을 전담하는 Police Training School과 전문·간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NPIA)가 있다. 이 두 기관 중 NPIA는 2007년 4월에 창설되었으며, 고급인재교육과 연구개발(Research, Analysis and Information Unit; RAI를 운영중임)을 주된 수행과제로 삼고 있다. RAI는 경찰활동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경찰지식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국립경찰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학술논문집 등

판례나 법령을 담은 자료를 1차 문헌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다양한 단행본이나 학술논문집은 이를 해석하거나 견해를 제시하여 가공해낸 2차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2차 문헌으로는 1187년도에 헨리 2세의 Chancellor였던 Granvill이 라틴어로 당시의 보통법을 정리·해설한 De Legibus et Consuetudinibus Angliae(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가 있다.

대학웹사이트를 통한 문헌검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Essex대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데이터 아카이브(UK Data Archive; http://www.data-archive.ac.uk)이다. 이 데이터 아카이브는 1967년에 제작된 것으로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Oxford대학교의 발행 학술지도 웹사이트(www.oxfordjournals.org)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PSI](#)

(다음 호에서 계속)

■ 현장의 소리

과학수사¹⁾ 영역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꿈꾸며

이형근*, 박상선** 경감

들어가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 사람 윗마을 구례 사람 닳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가수 조영남의 노래구절이다. 아랫마을 사람과 윗마을 사람은 왜 장터에 모였을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섬진강 하구에는 유난히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녀석들은 왜 하필 강 하구에 터를 잡았을까. 화개장터가 사람을, 섬진강 하구가 동식물을 이끄는 매력은 다름 아닌 **융합과 통섭**²⁾의 묘가 아닐까 한다.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 ‘융합’ 말이다.

필자들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범죄분석과정, 수사면담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법학’과 ‘사회·심리학’의 융합을 맛보았다. 그리고 차츰 ‘현장감식’과 ‘수사심리’의 융합도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 경찰의 과학수사는 그 역량과 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언제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과학수사도 이제는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도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외발 자전거를 타보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전거를 타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외발 자전거에 도전해 본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묘기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두발 자전거를 두고 굳이 외발

자전거를 고집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경찰의 과학수사가 외발 자전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과학수사 영역에서도 두 개의 바퀴가 힘을 모으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바퀴가 알맞게 균형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혈흔분석, 화재감식 등 현장감식 분야는 상당한 수준의 세분화·전문화를 이룩한 상태인 반면 범죄분석, 수사면담 등 수사심리 분야는 발전 속도가 다소 더디게 느껴진다. 조직·인력·예산 등 모든 면에서도 두 분야의 비중 차이가 확연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감식과 수사심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가령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다고 가정해 보자. 피해자와 용의자가 면식관계에 있고 용의자가 화간을 주장한다면 DNA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반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조사의 달인, 베테랑 형사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보이는 증거(물리적 증거)와 보이지 않는 증거(사회·심리적 증거), 그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영역에도 반드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외에도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은 아주 많다. 외근 형사와 과학수사 요원의 만남, IT 지식과 리갈 마인드의 만남, 법학과 심리학의 만남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융합의 묘를 소개해 보겠다.

*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 교수계 수사면담과정 담임교수/경감, ** 同 과학수사과정 담임교수/경감

융합과 통섭, 이래서 필요합니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외근 형사들을 대상으로 강력범죄수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강력과정 교과목에는 현장감식, DNA 감식, 미세증거물 감식, 진술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들에게 왜 이런 수업을 편성해준 것일까. 소양과목으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감식 전문가가 되라는 뜻도 아니다. 바로 융합·통섭의 묘를 살려보라는 취지다.

미세증거물 감식이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형사는 현장과 증거를 보는 눈이 남다르리라. 또한 진술분석의 원리와 준거를 알고 있는 형사는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이 남다르리라. 그래서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범인을 특정해낼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같은 진술을 통해서도 혐의를 포착해낼 확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과학수사 전문가도 리갈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면 위험한 한계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의 범위, 현장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이해 등은 그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필요해 보인다. 가령 화재감식 전문가가 방화의 의심 있는 가옥을 감식하다가 반소된 휴대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은 제216조에서 제218조에 걸쳐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앞의 화재감식 전문가는 현장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법적 근거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현장상황을 잘 설명하

고 압수와 관련된 기록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존과 같이 현장의 유류품을 무작정 수거하고 압수와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거나 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이 어렵게되었다. 2007년 형소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된 이래 점차 법해석의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선에서 제기된 문제 하나를 놓고 몇몇 교수들 간에 논의가 벌어졌다.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스마트폰을 압수한 경우 그 스마트폰(비밀번호 미설정)을 통해 피의자의 페이스북(자동 로그인) 계정에 접속하여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스마트폰과 SNS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범규정의 재해석 또는 재설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형소법 제216조에 의하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과연 규범적으로 ‘체포현장’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형소법 제215조에 의하면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페이스북의 내용이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형소법 제106조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있어 출력·복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제 아무리 IT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앞의 사례들을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융합적 접근은 실무뿐만 아니라 제도·법령의 개선에도 필요하다. 필자(이형근)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 근무하면서 ‘조서주의’의 폐단이 심각함을 절감하였다. 법학계 안팎에서 조서주의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미 양측의 논거는 더 이상 개발될 것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고 어찌면 논리 외적인 요소에 의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수사면담이라는 영역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서가 얼마나 부정확하고 불합리한 방식인지 알게 되었고 이런 견지에서 조서주의의 폐단을 밝히고 바람직한 진술청취 방법론을 제안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여겨지며 이 역시 법학과 심리학의 통섭이 필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마치며

처음 원고를 의뢰 받고 ‘교육기관도 현장인가.’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낼 자격이 있나.’ 잠시 몇 가지 고민이 스쳐갔다. 그리고는 이곳이 오히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기에 적합하고 또 그래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일천한 배움과 짧은 지면으로 인해 부족한 점이 많다. 융합·통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구나 하는 선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과학수사는 비단 현장감식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현장 탐문, 진술의 청취, 사이버 수사 등 모든 영역이 과학적 원리에 터잡지 않으면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할 때 그 완숙미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경찰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각 영역 간의 융합과 통섭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

야할 시점이다.

현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2013년 아산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분석·재정비하고 과정·과목 간 융합과 통섭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융합·통섭은 때때로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싹트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PSI](#)

- 1)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수사는 현장감식, 혈흔분석 등 전통적 과학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면담, 진술분석, 프로파일링, 온·오프라인 상의 추적기법, 디지털 증거분석 등 자연·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수사의 제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2) 융합(融合)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구별 없이 하나로 합하여 짐’을 의미하고 통섭(通涉)은 ‘사물에 널리 통함 또는 서로 사귀어 오감’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개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함을, 조직적 측면에서 각 분야 간 지식의 공유와 협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 본고 내용은 필자들의 사건으로 경찰수사연수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 전국 현직경찰관 중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학위논문을 1부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의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외 입법 및 판례 동향

2012. 7.~8.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4049호, 2012. 8. 22. 제정
- 시행: 2012. 8. 23.
- 주요내용

·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37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

· 이에 따라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4050호, 2012. 8. 22. 제정
- 시행: 2012. 8. 23.
-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1334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

·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제306호, 2012. 7. 9. 일부개정
- 시행: 2012. 7. 9.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고속도로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20명(경사 68명, 순경 4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859호, 2012. 6.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

·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경정 62명, 경감 414명, △경위 471명, △순경 5명)을 조정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명)을 일반직공무원 11명(행정서기보 11명)으로 전환하며,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반영하면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내 주요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갑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A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B경찰서 지령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함.

- 전화를 할 때마다 위 지령실에 근무하면서 그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위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A당의 지역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함.

- 판결요지[원심판결 파기환송]

-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

- 갑의 행위는 A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위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A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68 결정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1. 5. 20.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56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10. 20. 형법 제15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결정요지[합헌,각하]

- 헌법재판소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156조가 ‘허위의 고소·고발 등 예방 및 공정한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법률조항으로 처벌받는 개인의

불이익이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 및 피무고자의 개인적 이익의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으로 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2009. 2.경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그런데 2010. 1. 28. 위 조산원에서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함.

- 그리고 위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결정요지[합헌]

-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다수의견).

- 반대의견 :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 초기의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 범위 내에서 위헌임.

● 대법원 2012. 7. 30. 선고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 사건의 개요

- 피해자 A(여)는 B가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의 2층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임.
- 갑은 B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A와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A가 내려오자 A에게 말을 걸었으나, A는 갑의 말을 무시하고 이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갔고 갑은 A의 뒤를 쫓아가며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A에게 보임.
- 이 장소는 식당 및 편의점 등이 있어서 저녁 8시 무렵에도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A는 위 식당 옆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여 둔 상태였음.

- 판결요지[원심판결 파기환송]

- 피해자의 성별, 연령,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 등과 위 행위장소를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갑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갑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 결정요지[재판관 전원일치]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외국 주요 입법

●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死因) 또는 그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 2012. 6. 22. 제정 법률 제34호
- 시행: 2013. 4. 1.
- 주요내용

- 경찰 등(경찰과 해상보안청 포함)이 취급하는 사체를 조사, 검사, 해부 기타 사인 또는 그 신원을 밝히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인(死因)이 재해, 사고, 범죄 기타 시민생활을 위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피해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유족 등의 불안 완화·해소,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것을 본 법률의 목적으로 함.

외국 주요 판례

● 일본최고재판소 2012. 7. 24. 선고 22(あ)2011 판결

[감금치상, 상해피고사건]

- 판결요지

- 피고인 갑은 피해자 들을 불법감금하고, 각 피해자에게 감금행위의 수단 등으로서 폭행, 협박 등을 가하였음.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는데, 그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의 일종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정됨.
- PTSD로 인한 정신적 장애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감금죄가 아닌 감금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함. [PSI](#)

(정리: 김현숙 선임연구관)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2012년 7월 24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주취폭력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민영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호용 교수(단국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광기(인제대 알코올 및 도박문제연구소 소장), 배용주(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문상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기수(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취폭력의 현황 및 유형 분석, 주취자 관련 조치 문제를 살펴보고, 외국의 주취자 처리 실태와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경찰청의 주취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이 개진되었다.

2012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워크숍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소장 한광일 경무관)는 2012년 7월 12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정읍 소재 상두산 자연휴양림에서 2012년도 하반기 연구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실별 하반기 연구과제 주제 발표, 분임토의 및 「치안전망 2013」의 성공적 발간을 위한 연구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치안정책연구(제26권 제2호) 논문 공모

- ▶ 공모기간 : 2012. 8. 30. ~ 2012. 10. 2.
-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 ▶ 논문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사회안전, 교통, 안보대책 등 경찰관련 분야로서 다른 매체·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

연구관 동정

-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2년 8월 30일과 31일에 제170기 경정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7월 2일 도로교통공단 ‘저전력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통신체계 개발’ 과제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였다. 7월 17일 교통과학연구원 정기세미나에서 ‘교통시설용 무정전전원장치 개발 및 시범운영’에 대해 토론하였다. 7월 26일에는 ‘성남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고, 8월 17일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교통신기술 기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신규 교통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였다.
- ◆ 김현숙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7월 6일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찰법학회 정기학술회의에서 ‘법집행 엄격성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7월 1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안보국제협력분과)으로 위촉되었다. 7월 25일 오전에는 육군수도군단에서 정훈장교를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강의하였고, 당일 오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하반기 재외공관 파견자를 대상으로 ‘공간보안’에 대해 강의하였다.

연구소 인사

<전입> 김재철 경감이 장기국외훈련(스페인 카를로스 3세대학, 공안행정학 석사)을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3개월간(8.27~11.26) 연구소 교통대책연구실로 업무지원 발령되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